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-37호

「우편법 시행령」 제7조 및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의하여 「행정조사우편 서비스」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30일

우정사업본부장

「행정조사우편 서비스」 시험적 실시

1. 개요

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행정조사우편 서비스」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비스 명칭 : 행정조사우편 서비스

나. 서비스 대상 : 행정조사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정부부처,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

다. 우편종류 : 선택등기 우편물

※ 익일특급, 회신우편, 본인지정배달 등 등기통상 부가취급서비스 외에 사진 전송 서비스(1천원/통), 배달 횟수(1천원/회) 등 추가 가능

라. 조사방식 :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시 수취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항 확인 및 응답 회수 등 지정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여 발송기관에 회신

마. 조사 문항수 :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

바. 요금체계 : 등기우편을 활용하여 조사 문항수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우편요금 산정

- 우편요금 : 통상우편 요금 + 등기 및 부가 취급 수수료 + 문항수별 수수료(문항당 150원)

※ 우편요금 변경시에는 「국내통상우편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」 및 「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」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공고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